

컴퓨터프로그램, 소프트웨어 s/w 개발계약 분쟁 - 추가 요구사항 불성실이행 및 계약해

제 여부: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7. 1. 선고 2019가단5052733 판결



1. 개발용역 계약서 조항

제10조(계약의 해지) 1. 발주자 피고는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고, 개발자 원고가 이를 불이행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피고를 원고에게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.

1) 발주자 피고의 시정 요구를 개발자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

4. 개발자 원고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기지급된 계약금 등을 반환하는 것으로 본 계약이 종료되며, 지금까지 제작된 일체의 성과물은 발주자 피고의 소유로 한다.

2. 발주자의 계약해지 통지

발주자 피고는 여러 차례 납품기한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현재까지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,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액 전부와 현재까지 제작된 일체의 성과물을 피고에게 반환하라.'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.

3. 법원의 판단

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0조 제1항은, 발주자 피고의 시정 요구를 개발자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발주자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제10조 제4항은,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, 즉 개발자 원고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'원고는 지급받은 용역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반환하고, 그 때까지 제작된 일체의 용역 결과물까지 피고의 소유로 한다.'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원고에게 매우 불리함을 알 수 있다.

대법원 판례 중에는 공사도급계약과 유사하게 소프트웨어 개발, 공급계약에 대해서도 '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,

도급인 회사에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.87%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 회사에게 이익이 되고, 한편 도급인 회사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, 보완 제의를 거부하고 나아가 수급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해제의 통보를 하였다면, 그 계약 관계는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'가 있고(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다7932 판결 참조),

일반 원칙으로 돌아가더라도, 수급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일을 완성하지 못하였다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, 그 때까지 성과물은 수급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

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은 개발 완성도와 무관하게 '피고의 시정 요구를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'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를 반환하여야 함은 물론, 그 때까지 진행한 용역 성과물까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것으로 원고에게 매우 불리하므로, 설령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, **'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피고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'**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.

첨부: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7. 1. 선고 2019가단5052733 판결

기술법무, 저작권, 영업비밀, 계약분쟁, 손해배상, Claim, License, R&D 제휴계약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